

“방재산업...” 우리나라 15번째 특수분류로 제정



김 태 응
한양대학교
건설환경플랜트공학과 교수

방재산업이 우리나라 15번째 산업특수분류로 제정되어(표 1 참고) 2015년 1월부터 통계청 통계분류포털(<http://kssc.kostat.go.kr/>)을 통해서 관련 서비스(경제부문 > 특수분류 > 방재산업분류)가 제공되고 있다. 이번에 제정된 방재산업특수분류는 방재제품 제조업, 방재시설 건설업, 방재용품도·소매업, 방재 기술·연구개발·프로그래밍 서비스업, 방재 보험업·교육서비스업 및 협회·단체 등의 산업활동을 포함하고 있다(표 2 참고). 이러한 방재산업의 특수분류제정은 최근 급격한 도시화·산업화 및 범지구적인 이상기후 현상에 의해 점차 대형화·다양화되고 있는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방재산업 분야의 통계기반을 구축하고, 관련 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분류체계 기본틀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방재기술의 연구, 개발 및 방재산업의 육성, 방재제품 및 방재분야 산업체의 분류 등을 근거로 작성되었다.

우리나라 산업분류의 구조는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산업특수분류 등 2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는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는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사인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고시하여야 한다”)에 따라 국제표준산업분류(ISIC, 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Rev.4를 기본체계로 산업을 분류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새롭게 관심이 증대되고 신성장 동력으로 발전하고 있는 특정산업에 대한 통계지표를 효과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통계청에서는 산업특수분류를

도입하여 우리나라의 주요 관심 산업에 대한 분석과 행정목적에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산업특수분류는 1991년 9월 에너지 산업이 최초로 등록된 이래 물류산업, 스포츠산업, 자동차관련전용부품 제조업산업, 관광산업, 환경산업, 정보통신기술산업(이상 2000년 1월), 로봇산업(2006년 10월), 콘텐츠산업(2010년 2월), 저작권산업(2011년 11월), 공간정보산업(2012년 11월), 디자인산업(2013년 7월), 사회서비스산업, 소방산업(이상 2013년 11월)이 특수산업으로 분류되어 등록되어 있었으며, 2014년 12월에 방재산업이 15번째 특수분류로 제정된 것이다.

방재산업의 산업특수분류 제정은 그동안 모호했던 방재산업의 정의, 규모 그리고 범위를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방재산업의 진흥 및 정책 지원을 위한 기본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큰 의의가 있다. 또한 2014년 11월 국민안전처 출범과 더불어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안전산업으로의 확대개편 또한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러한 산업의 발전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정부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이 될 것이다.

〈표 1〉 방재산업 특수분류 추진경과

일시	내용
2013. 7. 1	방재산업특수분류(안) 마련을 위한 연구 착수(연구책임자 : 서경대학교 안재현 교수)
2013. 8. 27	방재산업특수분류(안) 작성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의 분류체계를 바탕으로 방재산업관련 분류체계 구성
2013. 9. 12	방재산업특수분류(안) 1차 자문회의 개최 소분류 항목과 KSIC 코드 연결
2013. 11. 29	방재산업특수분류(안) 2차 자문회의 개최 방재산업의 특성에 맞는 대분류 조정
2013. 12. 11	방재산업 특수분류(안) 3차 자문회의 개최 - 대(5개) · 중(19개) · 소(51개)분류체계로 방재산업특수분류(안) 확정
2014. 5. 16	2013년 방재산업 활동조사 착수 (연구책임자 : 한양대학교 김태웅 교수)
2014. 9. 23	통계청 방재산업특수분류(안) 현장 설명 및 의견 반영 통계조사 결과 파악되지 않는 소분류 조정 - 대(5개) · 중(19개) · 소(45개)분류체계로 방재산업특수분류(안) 확정
2014. 11. 17	방재산업특수분류(안) 제정 요청
2014. 12. 30	방재산업특수분류(안) 제정 승인

〈표 2〉 방재산업 특수분류 분류체계

방재산업 특수분류체계		
대분류(5)	중분류(19)	소분류(45)
1. 방재제품 제조업	11. 방재용 섬유제품 및 의복 제조업	111. 신체보호용 섬유 방재장비 제조업
		112. 방재용 섬유 피난제품 제조업
		113. 방재용 의복 제조업
	12. 방재용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121. 방재용 금속제 위험물 저장, 포장 및 운반제품 제조업
		122. 방재용 기타 금속제 가공제품 제조업
	13. 방재용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31. 방재용 판유리 가공제품 제조업
		132. 방재용 내화요업제품 제조업
		133. 방재용 내화석면, 암면 및 유사제품 제조업
		134. 방재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업
	14. 방재용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41. 방재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42. 방재용 고무제품 제조업
	15. 방재용 기계, 장비 제조업	151. 방재용 의료, 광학기기 제조업
		152. 방재용 측량, 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153. 방재용 전기장비 제조업
		154. 방재용 물품취급장비 제조업
	16. 방재용 선박 및 보트 제조업	161. 방재용 선박 및 보트 제조업
2. 방재시설 건설업	21. 방재시설 공사업	211. 풍수해 관련 공사업
		212. 지진, 산사태 관련 공사업
		213. 재난 관련 기타 공사업
	22. 방재시설 관리공사업	221. 재난 피해 복구 및 지원 공사업
		222. 방재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업
	23. 방재용 예·경보장치 설치 공사업	231. 방재 관련 예·경보장치 설치 공사업
3. 방재용품 도·소매업	31. 방재용품 도매업	311. 방재용 의복 및 섬유제품, 조명장치, 의료용품, 광학용품 도매업
		312. 방재용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
		313. 방재용 건축자재 및 철물 도매업
		314. 방재용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방재산업 특수분류체계		
대분류(5)	중분류(19)	소분류(45)
3. 방재용품 도·소매업	32. 방재용품 소매업	321. 방재용 가전제품 소매업
		322. 방재용 의복 및 섬유제품 소매업
		323. 방재용 철물, 건설자재, 전기용품 소매업
		324. 방재용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4. 방재 기술· 연구개발·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41. 방재시설 및 방재 기계, 장비 전문 설계업	411. 방재시설 전문 설계업
		412. 방재 관련 기계 및 장비 전문 설계업
	42. 재해 관련 영향평가, 기술 검사, 지질조사 서비스업	421. 방재시설 재해영향성평가·분석 서비스업
		422. 기타 방재사업 관련 재해영향성평가·분석 서비스업
		423. 방재 기술 시험, 검사, 분석 및 관련 지질조사·탐사 서비스업
	43. 방재시설 및 방재 기계, 장비 관련 감리업	431. 방재 시설공사 전문 감리업
		432. 방재용 기계 및 장비 제조·설치 전문 감리업
	44. 방재 관련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서비스	441. 방재 관련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서비스
45. 방재 관련 연구개발업	451. 방재 관련 연구개발업	
5. 방재 보험업· 교육서비스업 및 협회·단체	51. 방재 관련 보험업	511. 재해보험 서비스업
	52. 방재 관련 교육서비스업	521. 방재교육 전문대학
		522. 방재교육 대학교
		523. 방재교육 대학원
		524. 기타 방재교육 기관
53. 방재 관련 협회 및 단체	531. 방재 관련 협회 및 전문가 단체	